

한국의 경제시민성 형성에 관한 연구: 일제하 협동조합운동의 연대성과 민주성을 중심으로

김이경

성균관대학교 동아시아학술원 연구원, 한국근대사 전공

yesleft@gmail.com

- I. 들어가며
 - II. 협동조합 원칙의 이해와 확산
 - III. 연대성과 민주성의 기초 형성
 - IV. 나가며
-

I. 들어가며

1. 경제시민성 개념과 분화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 경제시민성 형성의 연원을 검토하는 것이다. 이 연구에서 주목하는 경제시민성 개념은 기존의 시민권 논의에서 분화되고 있는 경제와 윤리의 연결, 그리고 소비자 정체성과 연동된다. 경제시민성(economic citizenship)이란 적절한 삶의 질(decent quality of life)과 기본적인 경제적 자율성(basic economic empowerment)을 누릴 권리를 일컫는 개념이다.¹ 이는 사회 구성원이 사회적 산출물을 생산하고, 분배 과정에 기여함으로써 계급 불평등의 최소화, 생활 임금의 보장, 자아실현의 기회, 안전한 직업을 보장받는 것을 의미한다. 즉, 사회는 생산과 분배에 참여하는 구성원을 경제적 착취에서 보호하고, 시장 내에서 취약한 상태에 놓이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는 의미이다.²

최근 들어 경제시민성은 시민권과 연결하는 기존의 접근뿐 아니라 다양한 개념으로 분화하고 있다. 그중 하나는 소비자 정체성과의 연결이다. 20세기 초 인플레이션에 대응하기 위한 지역의 풀뿌리 단위, 주부의 시위에서 출발한 미국 중산층 소비자와 노동자의 동맹이 대표적이다. 시민들은 임금과 가격을 결정하는 기업(가)의 특권에 도전하였고, 시장 문제를 둘러

※ 이 논문은 2022년 한국학중앙연구원 공동연구과제 ‘한국적 시민성 형성의 특성에 관한 연구’의 일환으로 수행됨(AKSR2022-C11).

1 Linda Bosniak, “Citizenship and Work,” *North Carolina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and Commercial Regulation*, Vol. 27, No. 3(2002), p.501.

2 이러한 관점에는 사회는 구성원을 경제적으로 보호하고, 구성원은 사회적 생산을 통해 자신이 소속된 공동체에 기여해야 한다는 상호성의 원칙이 내포되어 있다. Stuart Gordon White, *The Civic Minimum: On the Rights and Obligations of Economic Citizenship* (USA: Oxford University Press on Demand, 2003), pp.17~18.

싸고 국가와 시민 사이에 역동적인 상호작용이 발생했다. 이 과정을 통해 노동자 또한 소비자 정체성을 받아들이고 생활임금(living wage)을 주장했고, 새로운 대중 소비자 정체성이 형성되었다. 그 가운데 경제시민성 개념이 분화하였다.³ 또한 여성의 경제적 권리와 배제, 젠더 간 경제 및 기회 불평등의 정책 계보를 추적한 젠더적 관점의 경제시민성 개념도 형성되었다.⁴ 이 외에 독일에서는 경제시민성과 관련하여 시민의 덕목, 그리고 윤리적 판단 능력과 연결한 경제시민(economic citizen) 개념을 강조하고 있다. 즉 경제가 윤리와 대립하는 것이 아닌, 사회(society)와 공존한다는 시민성을 강조하는 것이다.⁵

또한 반복된 경제위기와 금융시장의 불안정 속에서 경제적 윤리와 시민의 경제 참여 등이 강조되면서 시민경제(economia civile), 사회적경제(social economy), 사회연대경제(social and solidarity economy) 등의 용어가 등장하였다.⁶ 이 개념들은 다소 차이는 있지만, 핵심은 기존 경제학이 포괄

3 Meg Jacobs, *Pocketbook Politics: Economic Citizenship in Twentieth-Century America* (USA: Princeton University Press, 2005).

4 Alice Kessler-Harris, *In Pursuit of Equity: Women, Men, and the Quest for Economic Citizenship in 20th Century America* (USA: Oxford University Press, 2003).

5 이러한 논리는 개인은 공공복지(public welfare) 내에서 경제적, 정치적, 윤리적 의무를 판단할 수 있는 역량을 개발해야 함을 강조한다. Lorch Schank, "Economic Citizenship and Socio-Economic Rationality as Foundations of an Appropriate Economic Education," *Journal of Social Science Education*, Vol. 14, No. 1(2015); Peter Ulrich, *Integrative Economic Ethics. Foundations of a Civilized Market Economy* (USA: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8); Birgit Weber, "Economic Education in Germany," *Journal of Social Science Education*, Vol. 2, No 2(2002).

6 Stefano Zamagni와 Luigino Bruni는 *L'economia Civile*(2015)를 통해 시민경제(economia civile)의 개념을 제시하며 특정 부분이 아닌 시장경제의 총체 안에서의 사회적경제와 시민적 인본주의를 강조했다. 스테파노 자마니·루이지노 브루니(저), 지현주(역), 『21세기 시민경제학의 탄생』(서울: 북돋움, 2015) 참고. 사회적경제(social economy)는 프랑스에서 19세기 초부터 사용한 용어로 단순히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자활기업 등의 조직체 분류 또는 구분이 아닌, 사회와 경제를 동등하

하지 않은 시민사회와 비영리·비정부조직 및 제3섹터 영역의 서비스, 사업 등을 통한 경제적 실천과 성과를 내포하며, 시민성과 경제를 연결했다는 것이다. 이 개념들은 경제적 행위를 통해 민주적 의사결정을 실현하고 소수에게 이윤이 편중되지 않는 방법을 고안하였다. 즉, 제도 개선을 위해 활용되던 경제시민성 개념에서 확장하여 자본의 사회화와 분배의 공정성을 강조한다.

시민성과 경제를 연결하는 개념과 용어는 산업화 이전 시기로 거슬러 올라가 그 기원을 찾는다. 이때 언급되는 것이 다양한 결사체(association)이다. 종교 수도원, 기도원 등부터 시작하여 길드 동업자조합, 우애조합(friendly societies), 공제조합(mutual aid), 각종 회(會, society) 등이 주요 검토 대상이다. 이 과정에서 경제시민성 등 개념의 기준이 된 것은 결사체와 사업체가 결합된 협동조합이다. 협동조합은 170년 이상 협동조합 원칙이 유지·발전하고 있을 뿐 아니라 경제적 행위 또한 사회 속에 내포되어 있음을 가시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대표적인 조직이기 때문이다.⁷

국내의 경우, 경제시민성 논의는 중고등학교 경제교육의 개선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언급되고 있다. 경제시민성을 강조하는 이들은 이론 중심의

게 중요하게 강조하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 현재 이 개념은 다소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으며 국가별로 정리도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사회연대경제(social and solidarity economy)는 사회적경제와 연대경제의 개념을 통합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졌으며, 주로 유럽에서 사용되고 있다. 자끄 드푸르니·마르뜨 니센·나딘 리셰 바메스띠·리오넬 프루또·로랑 가르맹·장 루이 라빌(저), 김신양·엄형식(역), 『사회연대경제』(서울: 착한책가게, 2021) 참고.

7 특히 1844년 영국 로치데일공정개혁자회(Rochdale Society of Equitable Pioneer)의 성공과 이 조직의 바탕인 로치데일 원칙(Rochdale Principles)은 사회와 경제가 결합된 개념의 기준으로 제시되고 있다. 이 중 핵심적인 것은 ① 개방된 조합원 제도(open membership) ② 민주적 관리(1인 1표)(democratic control) ③ 이용에 따른 이윤 배당(distribution of surplus in proportion to trade) ④ 자본에 대한 제한된 이자(payment of limited interest on capital)이며, 이 원칙은 지금까지 협동조합 7원칙 중 핵심내용으로 강조되고 있다.

단편적인 경제교육의 한계를 지적하며, 경제적 실천과 시민성 함양을 포함할 것을 강조한다.⁸ 이들은 현재 경제교육이 사회 문제를 비판적으로 사고하고, 그 과정에서 문제해결과 도덕성 향상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성 형성과 피리가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하지만 시민성 함양과 경제시민성의 연결성과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은 건너편 채, 경제시민성이라는 용어만 반복적으로 강조되고 있는 상황으로 보인다.

경제시민성 개념은 소비자, 젠더 등을 포함하여 분화되고 있지만, 국내에서는 주로 경제교육과 교과 과정 등에 국한되어 있다. 그 이유는 국내에서는 시민성(citizenship) 개념이 주로 정치 투쟁을 통해 획득한 시민권 논의를 중심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경제와 관련된 논의는 대부분 거시적 차원의 불평등과 국가 복지 차원에서 다루어졌고, 개인, 커뮤니티, 지역 조직 단위의 상호성이나 경제적 연대는 행정을 보완하는 수준에서 언급되었다. 즉, 국내에서는 경제시민성과 관련된 개념과 논의가 아직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뿐만 아니라 경제시민성 개념 또한 한국적 맥락을 검토하여 적용하기보다는 이식되는 형태로 도입되었다. 영국, 독일, 이탈리아, 프랑스, 일본 등에서는 경제시민성과 관련된 개념을 자신들의 역사적 맥락을 파악하여 연결하는 작업을 진행했다. 반면, 한국에서는 계보 검토 작업이 다소 미흡한 상태이다. 두레, 계 등의 다양한 결사체에 관한 탐구는 분절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일각에서는 이를 이상화하기도 한다. 최근에 『한국 협동조합운동 100년사』가 정리되어 발간되어 그 맥락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고 있지만,⁹

8 김경모, 「경제학의 구조, 경제적 사회화, 경제적 시민성」, 『시민교육연구』 제26권(1998); 박도영·박주영, 「경제교육 목표로서의 “경제적 시민성”」, 『사회과학교육연구』 제15권 제15호(2013); 최병모·박형준·조병철, 「세계화·지식기반사회에 적합한 경제시민성 교육의 방향모색: 다중적·다차원적 경제시민성의 관점에서」, 『사회과교육』 제43권 제3호(2004) 등 참고.

아직 시민성과 경제를 연결하는 역사적 검토는 충분하지 못한 상태이다.

2. 연구 목적과 연구 방법

1) 연구 목적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일제강점기에 진행된 민간 협동조합운동을 통해 한국의 경제시민성에 관한 단초를 검토하고자 한다. 협동조합운동을 연구 대상으로 선정한 이유는 세 가지이다. 첫째, 당시 협동조합은 경제시민성의 구성 요소인 삶의 질 향상, 기본적인 경제적 권한을 획득하기 위한 기초 조직으로 작동했기 때문이다. 농민, 노동자, 주부, 학생 등 보통 사람들은 식민지배하에서 외국인 상인에 의한 가격 결정권을 수동적으로 받아들이기보다 경제적으로 연대하여 이를 능동적으로 전환하고자 했다. 이들은 일상용품의 가격을 당사자 스스로 결정하고, 이윤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방식으로 일상생활을 회복하고자 했다. 둘째, 농민, 노동자, 주부, 학생 등은 하나의 정체성으로 자신을 인식하는 것을 넘어 자신을 소비자로 인식하고, 소비자 권리를 주장하기 시작했다. 셋째, 이들은 식민지배 당국의 협동조합 정책을 비판하고, 자치적이며 민주적인 협동조합 운영 방식을 고민하고, 시도하였다.

민간에서 설립한 협동조합은 대부분 경제적인 문제를 공동으로 해결하기 위한 목적을 갖고 있었다. 마을과 시장이 멀리 떨어져 있었던 지역에서는 개별적으로 시장을 방문하거나 이용하는 것은 모두에게 손해라는 것을

9 한국협동조합운동 100년사 편찬위원회, 『한국 협동조합운동100년사』 I, II (고양: 가을의아침, 2019); 김형미, 「한국 생활협동조합운동의 기원- 식민지 시대의 소비조합운동-을 찾아서」, (재)아이쿱협동조합연구소, 『한국 생활협동조합운동의 기원과 전개』(서울: 푸른나무, 2012).

인지했다. 그 대안으로 자금을 모아 공동구매, 공동판매하는 협동조합을 설치하는 것이 자신들에게 경제적으로 유리하다고 판단했다.¹⁰ 또한 노동자들은 월급의 일부를 저축하여 공장 내에 일상용품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상점을 협동조합 형태로 설립하였다.¹¹ 이들은 일본인, 중국인 상인에게 장악된 상권에서 일상용품을 구입하는 것은 경제적으로 불리할 뿐 아니라 제멋대로인 가격 정책에 수동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인지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920년부터 1930년대 중반까지 최소 500개 이상의 민간 협동조합이 설립되었다. 조선총독부의 금융조합과 산업조합 등 협동조합 관련 제령이 있었음에도, 민간에서는 이를 비판하며 제령의 외부에서 임의조합 형태로 협동조합을 설립했다. 이들은 왜 산업조합이 아닌 임의조합 형태의 협동조합을 설립하였을까. 당국과 민간의 협동조합은 어떤 차이점이 있었던 것일까. 이러한 한국 협동조합운동의 형성과 전개 과정을 압축적으로 검토하며 보통 사람들의 경제적 협력이 연대성과 민주성으로 이어지는 궤적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¹² 당시 협동조합의 설립 증대는 협동조합이라는 용어의 정립뿐 아니라 협동조합 원칙이 적용되고 확산되는 시기였기 때문에 경제시민성 형성의 초기 과정을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10 「慶北唯一의 農村으로 理想村化한 平恩」, 《조선일보》, 1925년 11월 24일자.

11 대표적인 사례가 원산소비조합이다. 원산소비조합은 1922년 원산노동회 노동자가 중심이 되어 창립되어, 노동자들을 위한 소비기관으로 운영되었다. 또한 잉여금과 저장 곡식을 활용하여 1928년 원산총파업이 지속될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12 초기 한국 협동조합운동 전개 과정은 필자의 박사학위논문을 압축적으로 요약해서 수록하였다. 김이경, 「일제하 한국 협동조합운동의 형성과 전개: 개념·주체·연대를 중심으로」,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논문(2022a).

2) 선행연구와 연구 방법

일제하 협동조합과 관련된 연구는 주로 조선총독부에서 전개한 금융조합에 집중되어 있으며,¹³ 민간 협동조합의 경우는 천도교, YMCA, 협동조합운동사(協同組合運動社) 등 조직사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¹⁴ 협동조합과 관련된 연구는 관제 협동조합까지 포함하면 양적으로 부족하진 않다. 금융조합과 관련된 내용은 1차 사료를 통해 많은 부분이 구체적으로 검토되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협동조합운동’과 관련된 연구는 아직 충분하지 않은 상태이다. 금융조합과 달리 민간 협동조합의 경우 관련된 사료가 거의 남아 있지 않고 분석할 수 있는 자료가 신문, 잡지 기사 등으로 한정적이기 때문이다. 이에 협동조합이 내포하고 있는 사회성의 요소를 충분히 살펴볼 수 못한 측면이 있다.

조선농촌단체사를 다룬 문정창(1961)의 연구 이후, 앞서 언급한 세 조직이 민간 협동조합 연구의 기준이 되었다. 또한 대부분의 연구는 《동아일보》 창간 12주년 기념사업으로 진행한 「全朝鮮協同組合調査」(1932)를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 있다. 김현숙(1987)의 연구는 《동아일보》 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언론 자료를 검토하여 당시 협동조합의 데이터를 정리하였다. 이후 오미일

-
- 13 김민철, 「1930~40년대 조선총독부의 촌락 지배기구 연구」, 『역사문제연구』 제20권(2008); 문영주, 「조선총독부의 서구 협동조합 모방과 식민지적 변용」, 『한국사학보』 제32호(2008); 이경란, 『일제하 금융조합연구』(서울: 해안, 2002); 이동언, 「일제하 조선금융조합의 설립과 성격」, 『한국독립운동사연구』 제6권(1992); 최재성, 『식민지조선의 사회경제와 금융조합』(파주: 경인문화사, 2006).
 - 14 조형열, 「협동조합운동사의 조직 과정과 주도층의 현실 인식(1926~1928)」, 『한국사학보』 제34호(2009); 조형열, 「일제하 협동조합운동사의 협동조합운동」, 『동방학지』 제186권 제1호(2019); 장규식, 「1920-30년대 YMCA 농촌사업의 전개와 그 성격」, 『한국기독교와 역사』 제4권 제4호(1995); 한규무, 『일제하 한국기독교 농촌운동』(서울: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1997); Albert L. Park, "Reclaiming the Rural: Modern Danish Cooperative Living in Colonial Korea, 1925-37," *Journal of Korean Studies*, Vol. 19, No. 1(2014); 김권정, 「1920~30년대 한국기독교의 농촌협동조합운동」, 『승실사학』 제21권(2008).

(2008)은 김현숙의 연구에서 충분히 검토되지 않은 일본 협동조합 관련 법과 내용을 보완하였다. 또한 조형열(2009)에 의해 협동조합운동사(協同組合運動社)의 기초가 된 조직(한빛)과 구성원의 세부적인 연구가 이루어졌다. 하지만 세 개의 주요 조직사를 넘어서지 못한 측면이 있다. 반면 이경란(2013), 김형미(2012) 등은 기존의 관점과는 다른, 공유와 공생 그리고 연대성을 중심으로 협동조합 역사를 재구성하였고, 이는 민족주의 담론을 넘어서는 해석의 가능성을 마련해주었다.¹⁵ 더불어 정혜경(2001) 등 재일조선인의 소비조합 연구는 한반도에 국한된 협동조합 연구를 공간적으로 확장하였다.¹⁶

이 연구에서 앞서 진행된 연구를 바탕으로 질문을 도출하고 선행연구에

-
- 15 문정창, 『韓國農村團體史』(서울: 일조각, 1961)(초판 日本評論社, 1942); 김현숙, 「일제하 민간협동조합운동에 관한 연구」, 『사회와역사』 제9권(1987); 오미일, 『경제운동』(천안: 한국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2008); 이경란, 「한국 근현대 협동운동의 역사와 생활협동조합」, 『역사비평』 제102호(2013); 이경란, 「한국근현대사에서 공생적 관점의 도입과 협동조합운동사」, 『사학연구』 제116호(2014); 김형미, 앞의 책.
- 16 재일조선인들은 1920년대 후반부터 생활에 필요한 먹거리, 주거, 의료, 교육 등을 소비자협동조합을 중심으로 해결하고자 하였다. 관련 기초정보는 최근에 발간된 『재일조선인 단체사전 1895~1945』(2022)에서 파악할 수 있다. 지역에 초점을 맞춘 연구는 재일조선인이 가장 많이 거주한 오사카를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堀内稔(1980)와 外村大(1990)는 관서지방의 한신소비조합(阪神消費組合) 등의 자료를 발굴하여 개별 사례연구를 진행했다. 정혜경(2001)은 오사카 지역 협동조합운동을 구체적으로 다루며, 협동조합이 1920년대 후반 조선인 운동단체가 해산되는 과정에서 운동의 방향을 찾아나가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음을 강조하고 있다. 이 외에 김인덕은 재일조선인의 정주와 식민화를 살펴보는 과정에서 오사카소비조합, 자주적인 의료 진료소 설립 등을 다루었다. 재일조선인단체사전한일공동편찬위원회, 『재일조선인 단체사전 1895~1945』(서울: 민족문제연구소, 2022); 정혜경, 「1930年代 初期 오사카(大阪)地域 協同組合과 朝鮮人運動」, 『한일민족문제연구』 제1권 제1호(2001); 堀内稔, 「阪神消費組合について」, 『在日朝鮮人史研究』 第7號(1980); 김인덕, 「일제강점기 오사카 조선촌의 식민화」, 『동방학지』 제163권(2013); 김인덕, 「공간 이동과 재일코리아인의 정주와 건강: 〈大阪と半島人〉와 〈民衆時報〉를 통한 오사카[쓰루하시(鶴橋)]의 1930년대를 중심으로」, 『인문과학』 제73권(2019).

서 충분히 검토되지 못한 부분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본문에서는 1919년 3·1만세운동 직후부터 설립되기 시작한 소비조합이 아닌, 그 이전으로 시간을 확장하였다. 또한 공간적으로도 확대하여 일본의 「산업조합법(産業組合法)」 제정 전후 어떠한 정책과 자료를 활용하였는지 살펴본 후 한국으로의 유입 과정을 검토하였다. 선행연구와 같이 1920년을 시작 시기로 삼지 않은 것은 일본의 정책과 협동조합 이해 정도가 한국 민간 협동조합운동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동아일보》의 1932년 조사 외에 당시 보도된 매체 자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민간 협동조합, 특히 소비자협동조합(당시 용어로 소비조합) 데이터를 전체적으로 취합하여 대략적인 전체상을 검토하였다. 또한 연대성과 민주성의 초기 형성 과정을 살펴볼 수 있는 1920년대와 1930년대의 대표적인 두 지역 사례를 살펴보았다.¹⁷

17 민간 협동조합 사례는 다양하지만, 분량의 제한으로 두 개(함창협동조합과 정평소비조합)의 사례를 요약하여 수록하였다. 함창협동조합은 1926년 일본 도쿄에서 창립한 협동조합운동사에서 협동조합을 설립한 첫 시도인 동시에 성공한 사례이다. 또한 한국에서 협동조합이라는 용어를 거의 처음으로 사용하며 협동조합 원칙을 정관에 수록하며 실현한 곳이다. 정평소비조합은 1930년부터 정평군 각지에 설립되었고, 농민운동 조직과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로 성장하여 불경기에도 무리 없이 경영을 이어갔다. 이 사례들을 통해 1920년대와 1930년대의 협동조합 개념 이해의 확장과 지역 주민과의 연대를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민간 협동조합 자료의 한계 가운데 조합 정관, 경영 실적, 활동 내용 등을 상대적으로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사례로 선정하였다.

II. 협동조합 원칙의 이해와 확산

1. 경제적 자율성과 민주성 확보의 시도

일본은 산업 증진과 농촌 생산력 향상 및 빈곤 문제 완화 등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일환으로 1900년에 「산업조합법」을 제정하였다.¹⁸ 국가 정책으로 협동조합을 도입하였기 때문에 「산업조합법」을 둘러싼 논쟁은 20세기 초에 지속되었다. 특히 유럽을 직접 방문하여 협동조합 운영 방식을 연구한 연구자들은 협동조합의 자율성과 자치성을 강조하며 일본 산업조합의 역할과 성격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다. 우에다 데이지로(上田貞次郎), 오가타 기요시(緒方清) 등은 조합원 상호성에 기반한 공동운영이라는 협동조합의 기본 원칙이 제도화 과정을 거치면서 탈각되었다고 비판하였다. 가가와 도요히코(賀川豊彦)는 기독교적인 형제애(brotherhood)의 발전이 이상적인 경제사회 발전의 기본임을 강조하며 협동조합운동에 참여하였고,¹⁹ 산업조합이 윤리운동에 대한 자각과 협동조합 정신이 결여되었음을 비판하였다.²⁰ 이들은 국가 통제와 생산성을 위한 수단으로 협동조합이 활용되는 과정을 문제 삼은 것이다.

18 일본은 독일의 「산업 및 경제 협동조합에 관한 법률」을 모델로 하여 법을 제정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협동조합을 산업조합이라고 축약 번역하였다. 산업조합이라는 명칭에서 알 수 있듯이 주요 목적은 농촌의 생산성 향상을 촉진하고, 산업을 진작시키는 것이었다.

19 가가와 도요히코 외에 아오가키 젠치로와 나스 젠지 등은 이익공락, 인격경제, 자본협동, 비착취, 권력분산, 초정당, 교육중심을 강조하며 협동조합을 운영하였다. 가가와 도요히코(저), 홍순명(역), 『우에의 경제학』(홍성: 그물코, 2009); 가가와 도쿠아키(저), 홍민기(역), 「가가와 도요히코와 협동조합」, 『기독교사상』 제655권(2015), 73~92쪽; 로버트 실젠(저), 서정민·홍이표(역), 『가가와 도요히코 평전』(서울: 신앙과지성사, 2018).

20 賀川豊彦, 『産業組合の本質とその進路』(東京: 協同組合新聞社, 1940).

일본 내에서는 협동조합을 이해하고 도입하는 과정에서 정부와 지식인, 사회단체가 차이를 보였다. 일본 정부는 협동조합을 빈곤 해결과 생산성을 촉진하고, 노동자 연대와 사회주의 확산을 방지하거나 완화할 수 있는 조직으로 활용하고자 했다. 반면 지식인과 일반 대중은 자조(自助)를 기반으로 물가 문제에 대응하고, 소비 문제에 자치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조직으로 협동조합을 인지했다.

일본에서는 산업조합의 성격을 둘러싼 논쟁이 지속되었다. 하지만 산업조합이 한국으로 유입되는 과정에서 국가 정책을 통한 생산력 향상이라는 일본식 산업조합 논리가 적용되었다. 구체적인 예가 자치성, 자율성, 민주성이 배제된 금융조합과 산업조합이다. 한국에서는 1908년부터 산업조합이라는 용어가 소개되었지만,²¹ 한국인이 초기에 접한 협동조합의 내용은 일본 「산업조합법」을 축약·번역한 것이었다.²² 일본에서 국가 산업을 촉진하기 위해 선별적으로 받아들인 협동조합 개념 중에서도 일부 내용만 국내에 소개되었다. 그런 까닭에 거의 모든 산업에 협동조합을 적용할 수 있음에도 신용, 판매, 구매, 생산으로 사업 범위를 한정하는 등 초기부터 제한된 정보가 유입되었다. 또한 협동조합과 주식회사를 구별하지 못하거나 차이점을 정확히 인지하지 못한 채 소비조합을 설립하기도 했다.

조선총독부는 1914년 「지방금융조합령」을 통해 독일 라이파이젠식 신용조합을 모방한 금융조합을 운영한다고 발표하였다. 하지만 금융조합은

21 耕世生, 「民業振興의 私見」, 《서북학회월보》 제5호(1908년 10월 1일), 34쪽.

22 재일본유학생학우회에서 발간한 《學之光》을 통해 1910년대부터 산업진흥과 관련한 논의 가운데 산업조합, 신용조합, 생산조합, 구매판매조합 등의 개념이 소개되었다. 1910년대 재일유학생의 경제 관념에 대한 논의는 다음의 글을 참조할 수 있다. 務實生, 「企業論」, 《學之光》 제3號(1914), 28~29쪽; 金鏗洙, 「勞働者에關하여」, 《學之光》 제10號(1916), 13~15쪽; 崔環浩, 「朝鮮人的生活과産業組合의必要」, 《學之光》 제12號(1917), 26~27쪽; 정혜경, 「1910년대 재일유학생(在日留學生)의 경제 문제인식: 『학지광(學之光)』을 중심으로」, 『청계사학회』 제13권(1997), 559~584쪽.

총독부의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는 농촌 지역을 포괄하기 위해 시행된 측면이 컸다.²³ 「지방금융조합령」은 관에 의한 통치와 민(民)의 협력이라는 반관(半官)적 성격을 동시에 내포하고 있었다. 금융조합은 조선총독부의 활용과 통치 아래에서 협동조합이 포괄해야 하는 조합원 중심의 자율성, 자치성, 민주성 등 요소가 탈각된 채 추진되었다.²⁴ 일본 내에서 산업조합은 자율에 기반한 협동조합 방식이 아닌 국가 중심의 하향식으로 운영된다고 비판받았는데, 금융조합은 「산업조합법」이 내포한 자율성과 하향식이라는 성격을 더욱 강화하여 확대되어 적용된 것이다.

금융조합의 관제적 성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조선총독부에서 임원 임면권을 갖고 있어, 조합원 자치를 제한하고 업무대행자가 주인이 되는 구조를 강제했다. 둘째, 조합 업무의 자율성이 제한되었다. 조선총독부 명령에 의해 금융조합 업무가 조절되고, 세부적인 사항도 결정되었다. 셋째, 자본 활용과 보관처가 조선총독부에 의해 규정되었다. 넷째, 조합원의 경제적 연대가 아닌, 조선총독부의 지원금에 의존하여 운영되었다. 다섯째, 조합원 총회를 약화하기 위한 총대회(總代會)를 의결 기구로 설치하였다.

조선총독부에서 시행한 또 다른 협동조합 정책은 「조선산업조합령」이었다. 한국인들은 1920년대 초부터 금융조합의 한계를 지적하며 산업조합과

23 금융조합은 통감부가 지방금융조합규칙을 1907년에 제정하여 군단위로 조직되기 시작했고, 1914년에 조선총독부의 「지방금융조합령」에 의해 설립되었다. 금융조합은 평의원을 통해 면 단위의 담당구역을 지정하였고, 리, 동 단위의 여러 단위의 계(저축계, 농계, 부업계, 대두경작계 등)와 모범부락을 설치하여 운영하도록 하였다. 금융조합에 하루 조직을 촘촘하게 만들어 판매와 수익, 저축을 금융조합으로 연계하는 방식을 취하여 농촌의 자금 흐름을 장악하였다. 이경란, 「일제하 금융조합의 농촌침투와 산업조합」, 『역사와실학』 제19·20집(2001).

24 금융조합은 관치조직과 상호조직이 혼합되어 있는데, 협동조합과 유사한 측면보다는 협동조합의 자율성과 상호성이 부정되는 구조로 구성되었다. 이에 관해서는 다음의 연구를 참고할 수 있다. 문영주, 앞의 논문.

관련된 법의 필요성을 지속해서 강조했다. 대부분 산업조합을 경제와 도덕이 결합되었다고 이해하며, 이를 긍정적으로 평가했기 때문이다.²⁵ 「조선산업조합령」이 시행되기 전, 한국 지식인들은 일본의 산업조합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국내에도 이와 같은 조직이 필요함을 거듭 언급하였다.

이런 까닭에 산업조합령이 시행되기 3년 전인, 1923년에는 조선총독부의 산업조합령 발표에 기대를 가졌다. 1926년 1월, 「조선산업조합령」(제령 제2호)이 시행되어 금융 외의 사업이 가능해졌고, 사단법인으로 법인화도 가능했다. 하지만 산업조합 관련 법을 기대한 이들은 이 제령을 적용하는 것을 회피하였다. 민간에서는 「조선산업조합령」에 의한 사단법인으로 조직을 운영하지 않고, 임의조직 형태로 협동조합을 설립한 것이다.

「조선산업조합령」은 금융조합 운영 방식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자율성이 부여된 것으로 보인다. 산업조합은 시행 초기부터 총회를 통해 조합원 중에서 임원을 선출할 수 있었다. 산업조합연합회의 이사장, 이사, 감사 등 임원 또한 총회에서 선출이 가능했다. 조합원에 의한 임원 선출과 총회 중심 의사결정 방식은 협동조합의 자율성에 기반한 것으로 보인다. 금융조합과 비교하면, 일본인 임원 임명의 강제성도 상대적으로 약했다. 이는 조선총독부의 재정적 지원과도 연계되는 것으로, 지원금의 규모만큼 간섭의 정도가 결정된다는 것을 의미했다.

「조선산업조합령」은 일본 「산업조합법」과 같은 용어를 사용했지만, 그 내용은 많은 부분이 달랐다. 우선 협동조합 원칙과 거리가 있었다. 허가와 업무의 단속, 감독권이 조선총독에게 부여된 것은 물론이며, 자산 관리 주체도 조합원이 아닌 조선총독부에 있었다. 함상훈(협동조합운동사 중앙상무집행위원)은 산업조합이 “비(非)자주적 결합”을 갖고 있음을 지적했다.

25 徐相日, 「朝鮮青年會의理想과事業」, 《新民公論》, 1921년 6월호, 17~18쪽; 韓重鎰, 「産業組合經營의 基礎觀念을 論함」, 《개벽》 제33호, 1923년 3월 1일.

그는 「조선산업조합령」에 대해 “주식회사의 정신을 그대로 남겼다. … 산업 조합에 의한 구매조합은 조합의 근본정신을 결여하여 완전한 협동조합”이 아니라고 비판했다. 또한 그는 지향해야 할 협동조합은 “자주적이고, 평등주의요, 조합원 본위일 것이다. 즉 1인 1구 주의 부득불하여 1인이 여러 구(數口)를 가질 때는 1인 1표 주의, 이용고(利用高)에 의한 이익의 분배, 현금주의(現金主義)이어야 한다.”²⁶라고 하며 협동조합 원칙을 강조했다.

민간에서는 협동조합이란 조합원을 중심으로 한 자주, 평등이 중심이 되어, 자본이 아닌 사람이 중심이 된 1인 1표를 원칙으로 해야 함을 이미 파악하고 있었던 것이다. 또한 소수의 자본가에 의해 조합 운영이 좌지우지 되지 않도록 한 사람이 출자할 수 있는 구수를 제한하고, 출자금에 따른 배당이 아닌 이용에 의한 배당 등 로치데일 원칙에 따라 실행되어야 함을 피력했다.

1920년대 중반 이후, 일본 유학과 덴마크 등 유럽을 방문하여 협동조합 논쟁을 직간접적으로 경험하거나 자주적 협동조합 모델을 직접 접한 이들이 협동조합 설립에 참여하면서 담론에 변화가 일어났다. 이들의 경험과 지식으로 보면, 「조선산업조합령」은 협동조합에서 지양해야 할 요소들이 포함되어 있었다. 그런 까닭에 산업조합은 1926년에 시행되었음에도 많은 이들의 비판의 대상이 되었고 활용도도 낮았다.

산업조합과 협동조합의 수를 창립일 기준으로 비교하면 산업조합에 대한 낮은 호응도를 알 수 있다. 그림1은 「조선산업조합령」이 시행된 1926년부터 1930년대 초까지 두 조직 형태를 비교한 그래프이다. 설립일 기준으로 조합 규모를 비교하면 민간 협동조합은 1927년부터 1930년간 145개 설립되었지만, 산업조합은 38개에 그쳤다.²⁷ 민간에서는 「조선산업조합령」에

26 함상훈, 앞의 책, 30쪽.

27 車田篤, 『朝鮮協同組合論』(京城: 朝鮮金融組合協會, 1932), 386쪽.

의한 사단법인 형태로 협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었다. 하지만 협동조합
 구성원들은 조선총독부의 법역 내에서는 자율적으로 협동조합을 운영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이를 활용하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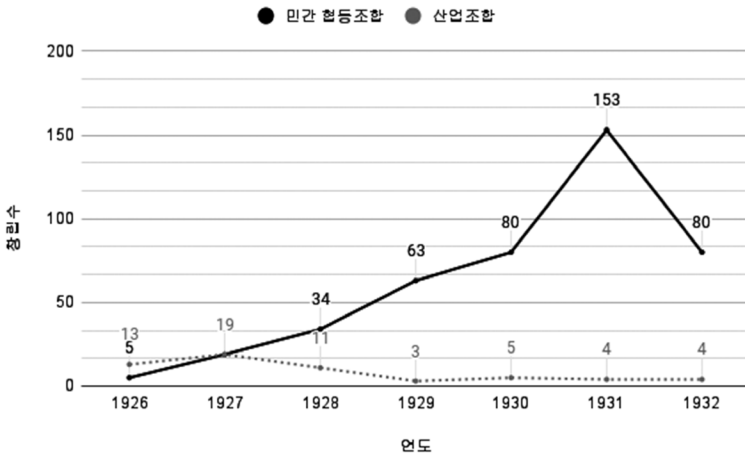


그림1-1920~1930년대 협동조합과 산업조합 설립 양상 비교²⁸

한국인들은 조합원 가입과 임원 구성, 조합 자금의 자율성이 배제되는
 조합은 협동조합이라는 명칭만 갖고 있을 뿐 그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점을 인지한 것이다. 결국 민간 협동조합 리더들은 조선총독부의 제령을
 회피하는 전략을 취한 것으로 보인다. 제령의 외부에서 임의조직 형태로
 설립된 협동조합은 1926년부터 매년 증가하여 1930년대 중반까지 최소
 500개 이상에 달했다. 협동조합에 참여한 인원수는 자료의 부족으로 정확
 한 규모는 파악하기 어려우나, 천도교 농민공생조합까지 포함하면 최소
 14만 명 이상으로 추산된다.

28 《동아일보》, 《조선일보》, 《중외일보》, 『朝鮮金融組合聯合會十年史』 등 취합; 김이경,
 앞의 논문(2022a), 89쪽.

협동조합이 국내에 유입된 초창기였기 때문에 로치데일 원칙을 기준으로 한 협동조합이 확산되는 것과 실천 여부는 비례하지 않을 수도 있다. 협동조합을 추진한 단체의 목적에 따라, 조합원의 정보량에 따라, 성향에 따라 협동조합을 이해하는 정도가 달랐다. 하지만 이들의 공통점은 「조선산업조합령」에 의한 법인화가 아닌, 제령의 외부에서 협동조합을 설립하고, 조선총독부에 의한 조합이 아닌 조합원 중심의 협동조합 운영을 시도했다는 점이다.

2. 다양한 협동조합 모델의 수용과 한국식 적용

한국 협동조합운동은 협동조합 원칙을 중시한 일본 지식인의 담론과 사례, 그리고 덴마크와 영국의 협동조합 모델에 영향을 받았다. 1920년대 중반 이후, 일본 유학 및 유럽을 시찰한 이들이 등장하였다. 이들은 국가 생산성에 중심을 둔 일본 산업조합론을 둘러싼 비판적 담론과 논쟁, 조합원을 중심으로 운영된 민간 협동조합을 직간접적으로 경험했다. 이들은 일본 산업조합의 틀에서 협동조합을 이해한 것이 아닌, 유럽의 다양한 사례를 통해 협동조합 역사와 운영 방식을 파악하였다. 협동조합운동사와 기독교 계열에 참여하고 있던 이들은 전국을 순회하며 협동조합이라는 용어와 원칙을 쉽게 설명하는 강연을 개최했다. 또한 관제 협동조합 비판과 동시에 영국 로치데일 조합과 덴마크 협동조합 모델 등을 한국에 적용하고자 하였다.

협동조합운동사는 영국 모델을 강조했다. 1920년 《동아일보》의 「消費組合은 何오」 연재기사 이후, 로치데일 조합이 다시 강조된 시기는 1927년 11월이다. 이즈음 신언준이 《동아일보》를 통해 「協作運動을 提唱」라는 기사를 연재했고, 협동조합운동사에서 작성한 소책자 『協同組合運動의 實際』가 국내에 발간되었다. 협동조합운동사 구성원의 대부분은 1920년대 중반

이전에 일본으로 건너가 도쿄 유학 생활 중에 협동조합을 접했다. 이들은 일본에서 유럽의 사회주의 개념을 접했을 뿐 아니라, 산업조합 논쟁에 참여한 아베 이소오(安部磯雄)와 가가와 도요히코 등 지식인들의 강의와 그들이 설립을 주도한 도쿄학생소비조합 등을 직간접적으로 접했을 것으로 추정된다.²⁹

일본에서는 산업조합을 둘러싼 논쟁과 민간 구매조합 설립이 1920년부터 본격화되는데, 이는 협동조합운동사 구성원들이 일본에서 유학한 시기와 겹친다. 협동조합운동사 구성원들은 이러한 상황에서 협동조합을 단편적으로 이해하는 것을 넘어, 산업조합이 다층적인 성격을 갖는다는 점을 인지하였을 것이다. 특히 와세다대학을 중심으로 도쿄학생소비조합, 가정구매조합 매장이 설치되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³⁰

덴마크 모델을 강조한 그룹은 기독교 계열이다. 국내에서는 한국과 덴마크의 역사적, 지리적, 산업적 동질성을 강조하며 덴마크 모델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모습을 보였다. 지식인들은 덴마크가 한국보다 국토가 작고 전쟁을 겪어 폐허가 되었지만, 농촌을 중심으로 성공적으로 재건한 배경에 주목하였다. 덴마크의 성공 요인으로 협동조합과 이를 통한 농촌 부흥이라는 연결은 더욱 관심을 끄는 부분이었다.³¹

29 아베 이소오는 도시사대학에 근무하던 1898년에 로치데일 조합을 모델로 한 학생소비조합을 설립했다. 학생소비조합은 인근 상점의 폭리를 비판하며, 학생들에게 저렴한 학용품을 공급하기 위한 일환으로 교직원과 학생이 힘을 모아 설립, 운영하였다. 또한 1926년에 학생 700여 명 그리고 가가와 도요히코와 함께 도쿄학생소비조합을 설립하여 와세다대학에 첫 지부를 설치하였다. 그는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준비 단계로 협동조합을 인식했으며, 계급투쟁과는 달리 독자성을 띠는 운동으로 보았다. 小嶋翔, 「戦前期消費組合運動における理念と實際運営: 平塚らいてう「消費組合我等の家」に注目して」, 『日本経済思想史研究』 第16號(2016).

30 협동조합운동사 구성원의 다수는 와세다대학에 재학하였다. 와세다대학 정치경제학 교원은 노동문제와 노동조합, 유럽 사회주의운동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었다. 그뿐만 아니라 와세다대학에 도쿄학생소비조합이 처음 설치되었다.

1926년 방태영의 유럽 답사 이후, 기독교 지도자인 신흥우, 홍병선 등이 연이어 덴마크를 방문하면서 ‘덴마크식 조선’ 만들기가 시도되었다. YMCA에서는 유럽과 북미를 시찰한 신흥우와 홍병선이 중심이 되어 전국 농촌을 방문하며 토지문제, 소작권, 종자개량과 관련된 교육을 진행했다. 이미 YMCA에서는 1926년 9월부터 1929년 5월까지 촌락 188개를 조직하였고, 170개의 촌락에서는 농촌 사업을 실행 중이었다. 이 촌락들 가운데 협동조합은 49개가 설립되었고, 농민수양소를 거쳐 간 생도도 4,856명에 이르렀다. 1928년부터는 소비·신용조합을 설립하기 시작하였는데, 다른 조직과 달리 신용조합을 강조했다라는 것이 특징이다.³²

YMCA연합회에서는 1932년 12월, 서울 신촌 지역에 ‘정말국민고등학교식 농민수양소’를 개설하여 협동조합 확산을 도모하였다. 이곳에서는 덴마크 성인교육 기관인 폴케호이스콜레(Folkehøjskole)와 같이 청년 농촌지도자를 양성하여, 이들이 자신의 지역으로 돌아가 농촌 사업을 주도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다만, YMCA는 덴마크를 직접 시찰했음에도 불구하고 덴마크에서 강조한 기독교 정신과 자국어, 자국 역사 등을 교육에 적용하지 않았다. 농민수양소는 농촌 상황을 개선할 기술 획득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기 때문이다.

반면, 평안북도 정주 오산학교 설립자 이승훈의 종손인 이찬갑은 덴마크

-
- 31 양주삼, 「農民樂園의 丁抹國」, 《新生》 제3권 제7호(통권 제22호, 1930년 7~8월호), 12~13쪽; 「協作運動을 提唱(十)」, 《동아일보》, 1927년 12월 17일자; 「宣川에 模範農村」, 《동아일보》, 1929년 3월 16일자; 「丁抹式農村建設畜産組合創立」, 《동아일보》, 1931년 3월 4일자; 양주삼, 「幸福스러운 丁抹의 農民」, 《衆明》 제1권 제3호(1933년 8월호), 112~114쪽.
- 32 이기태, 「정말의 농업(1~9)」, 《青年》 통권 제129호(1925~1926년 3월호); 홍병선, 「정말을 향하면서」, 《青年》 제7권 제6호(1927년 7/8월호); 홍병선, 「구미농촌사업 관찰도상에서(3)」, 《青年》 제8권 제5호(1928년 6월호); 신흥우, 「정말의 협동조합」, 《青年》 제8권 제9호(1928년 12월호).

모델의 자주경제와 자국어, 자국 역사 등에 주목하였다. 그는 덴마크 모델 중 협동조합을 통해 자주경제를 확립할 수 있는 방법을 활용하고자 했으며, 덴마크 민족의 자립 정신을 강조한 목회자 그룬트비(Nikolaj Frederik Severin Grundtvig)에 공감하여 '나라의 말과 역사'가 중요함을 용동마을에 피력했다. 이찬갑은 가가와 도요히코 등이 중심이 되어 덴마크 모델을 모방한 일본 농촌복음학교와 소비조합을 방문한 후, 마을 내에 소비조합(1929)과 오산양계조합(1931)을 설립하였다. 당시 용동마을은 소비조합과 협동생산, 협동소비가 여러 마을을 중심으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자치적인 모범촌" 사례로 알려졌다.³³

이처럼 협동조합운동의 주체들은 1920년대 중반 이후 일본 유학과 유럽 시찰 등으로 협동조합의 이해가 깊어졌다. 일본 「산업조합법」에 국한하여 협동조합을 이해하는 것을 넘어 일본 산업조합을 둘러싼 논쟁과 민주적인 운영을 중시하는 협동조합과 관련 내용을 직간접적으로 경험하였다. 또한 유럽을 직접 방문하는 경험을 통해 한국 협동조합이 다양하게 변용되었다. 이런 배경을 바탕으로 하여 1930년 전후로 협동조합의 설립 주체 또한 다각화되는 양상으로 전개되었다.

3. 낯설과 친밀함의 연동

유럽과 일본을 거쳐 유입된 협동조합 개념은 한국 문화와 결합되어 변용되기도 했다. 한국인들은 외국에서 유입된 협동조합을 낯설게 여기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용어와 개념은 낯설지라도 공동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여러 사람이 모이는 행위 자체는 익숙하게 받아들였다. 특히 협동조

33 安民世, 「五山の 校庭에서(二) 定州紀行」, 《조선일보》, 1930년 5월 10일자.

합 지도자들은 강연 초반에 협동조합과 계(契)를 연결하여 개념을 설명했다. 글을 읽지 못하는 이들에게 협동조합을 선전할 경우, 계를 조직하는 방식과 같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여러 방면으로 자유롭게 조직된, 익숙한 형태인 계와 협동조합의 유사성을 초기에 언급함으로써 다른 나라보다 쉽게 협동조합을 이해하는 분위기가 조성되었다.³⁴ 협동조합이라는 개념을 낯선 것으로 인식하지 않은 배경에는 일상적으로 경험한 계의 영향력을 간과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협동조합과 계는 공동의 목적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이를 달성하기 위해 힘을 합한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한국인에게 계는 익숙한 일상이었고 문화였다. 그런 까닭에 협동조합 지도자들은 협동조합과 계의 차이점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계와 협동조합의 공통점을 강조할 수밖에 없었다. 한국인들에게 협동조합은 낯설지만 익숙한 개념으로 인식되었고, 이에 1920년대 중반 이후 급격히 증가할 수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협동조합 지도자들은 계와 협동조합이 형태적인 측면에서는 연속성을 갖고 있다고 언급하면서도 차이점이 존재한다고 강조하였다. 협동조합은 계와 달리 '경제적 약자의 해방조직체'라는 성격을 갖는다는 것을 부각했다. 협동조합과 계가 공통점은 있지만, 목표에서 차이가 있다는 것을 강조한 것이다. 함상훈은 협동조합을 "자본사회에서 경제적 약자가 상호부조의 정신으로 경제적 향상을 기도"하는 것으로 정의했다. 그는 자본주의하에서 협동조합을 통한 경제적 약자의 상호연대를 강조했고, 계와 협동조합은 시대적 상황과 목적이 다름을 지적했다.

또한 김성숙은 계를 통해 협동조합을 이해하는 것이 반복되면 협동조합에 대한 인식이 정립되지 못할 것을 우려하였다. 그는 협동조합의 이해를 위해 익숙한 계를 언급하는 것에는 동의하지만, 이러한 기초적인 개념만

34 김성숙, 「協同組合實務講話(二)」, 《동아일보》, 1932년 1월 24일자.

반복되고 더 나아가지 않는다면 협동조합에 대한 파악 자체가 “불철저”해질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그는 협동조합이 발달한 국가 또는 지역에서는 이전의 관습(舊習)에서 벗어났지만, 한국에서는 재래의 계에 대한 관념과 협동조합 사상이 서로 교착하며 자체적인 관념이 형성되고 있음을 우려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양상으로 인해 한국 협동조합이 독자적으로 성장하는 데 제약이 생긴다고 언급하였다. 당시 한국의 계는 일본의 통치 수단 중 하나로 작동되던 상황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협동조합 지도자들은 계의 본래적 기능이 상실되고 오직 형해(形骸)만을 남기고 있음을 안타까워하며 협동조합과 거리를 둔 것으로 보인다.

계 외에 주목해야 할 부분은 한국의 나눔과 빈자(貧者)에 대한 배려가 협동조합 운영 방식과 결부된 점이다. 함창협동조합(1927)의 사례가 대표적이다. 함창협동조합에서는 현금 출자를 할 수 없는 가난한 사람에게 출자금 불입을 유예하고, 이용 시 발생하는 적립금을 출자금으로 축적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빈자들의 가입을 독려했다. 함창협동조합에서는 조합원의 경제 상황에 부담 가지 않도록 분할 또는 유예할 수 있는 다양한 출자금 제도를 마련한 것이다. 특히 출자금조차 부담스러운 자들을 배려한 한국식 협동조합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다.

Ⅲ. 연대성과 민주성의 기초 형성

1. 사례1: 함창협동조합과 협동조합 원칙의 확산

앞서 언급한 함창협동조합은 한국식 협동조합의 특징을 보여주는 사례일 뿐 아니라 조합원의 연대와 민주적인 협동조합 운영을 촉발한 조직

이다.³⁵ 합창협동조합은 1926년 도쿄에서 유학하던 한국인 학생들이 중심이 되어 창립한 협동조합운동사의 구성원이 처음으로 실행에 옮긴 조합이다. 여러 어려움 끝에 1927년 1월, 11명의 농민이 모여 창립한 합창협동조합은 창립한 지 6개월 만에 조합원 11명에서 422명으로, 하루에 400원 이상의 매상을 올릴 만큼 성장하였다.³⁶ 합창협동조합의 목적은 경제적 단결과 자주적 훈련이었고, “분산적 생활에서 집단적 생활”과 “자주적인 방식을 통한 조합원의 생활 개편”을 목표로 했다. 개별적으로 외국인 상인을 통해 일상용품을 구입하고 각자 비용을 부담하는 방식이 아닌, 집단의 경제적 단결을 통해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자는 의지를 내포한 것이다.³⁷

합창협동조합에서는 자산을 가진 사람이 의사결정 권한을 독점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1인 1구로 출자금을 제한했다. 자본을 많이 가진 이가 무제한으로 출자를 하면, 의사결정에도 비대칭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를 미리 방지하기 위함이었다. 합창협동조합은 출자금 제한과 함께 1인 1표를 연동하였다. 이를 통해 자본 중심이 아닌, 조합원 즉 사람이 중심인 조직 운영과 의사결정 구조를 구축하고자 하였다.

또한 이용에 따른 배당을 추진하였다. 합창협동조합에서는 “잉여금 배분

35 합창협동조합의 운영 원리와 인근 지역으로의 확산 양상은 김이경, 「일제하 경성 북도 합창협동조합 설립과 모델의 확산」, 『인문과학』제86집(2022b)에서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36 합창협동조합은 1927년 1월 14일 밤 10시경, 함창읍 오사리 214번지 가택에 모인 11명의 농민이 중심이 되어 창립하였다. 창립총회 직전, 창립 발기인으로 이름을 올린 지역 유력자 서른여 명은 가난한 농민이 함께하는 조합을 불신하며, 창립총회에 나타나지 않았다. 설립을 주도한 진준환은 협동조합을 투자와 회수의 관점으로 파악하여 함께하는 농민들을 믿지 않는 유력자에 대한 기대를 접고, 농민들과 함께 정관을 만들어나갔다. 창립 시 11명에 불과했던 조합원은 반년 만에 400명 이상으로 증가했고, 판매하는 물품도 8개에서 100여 종으로 확대되었다. 하루 평균 매출은 26원이었고, 최고 400원의 매상을 기록했으며 6개월간 500원 이상의 이익을 거뒀다. 協同組合運動社, 『協同組合運動의 實際』(東京: 協同組合運動社, 1927), 6쪽.

37 協同組合運動社, 위의 책, 22쪽.

의 공평”을 강조하며, 자본의 유무보다 이용과 참여 정도를 중시하는 것을 명확히 하였다. 이용고 배당은 조합원이 출자를 얼마 했는가를 기준으로 설정하는 것이 아닌, 매장을 얼마나 자주 이용했는지에 따라 배분하는 것이다. 이는 협동조합 원칙의 중요한 내용이었는데, 함창협동조합은 이용고 배당을 정관으로 명기하고 사업을 진행하였다.³⁸

이용고 배당이 중요한 이유는 1920년대 초 소비조합과 비교할 때, 협동조합 운영 방식이 변화되었음을 파악할 수 있는 기준이기 때문이다. 1920년대 초에 설립된 목포소비조합, 공주소비조합 등에서는 지역 자산가를 중심으로 출자금 배당이 진행되었다. 목포소비조합의 경우 임원 자격이 일정 금액 이상의 출자금을 투자하도록 되어 있는 등 협동조합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 방식으로 운영되었다. 즉, 협동조합과 주식회사 등 일반 기업을 구분하지 못하던 상황이 1927년을 기점으로 조금씩 변하기 시작한 것이다.

출자금을 기준으로 배당하는 것은 초기 자금을 모을 때, 동인이 되어 자본금 마련이 수월하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이러한 방식은 주식회사의 이윤 배당과 차이가 없다. 함창협동조합 설립 이전에는 소비조합이지만 무제한 출자가 가능한 곳도 있었고, 이들 대부분은 출자금 배당을 했기 때문에 이익단체와 다를 바가 없어 자본주의적 개인영리조합이라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³⁹ 함창협동조합의 정관과 모델이 경상북도를 중심으로 전국으로 알려지게 되면서 협동조합은 이용고 배당을 중심으로 운영되어야 한다는 것이 보편적으로 인식되기 시작했다.⁴⁰ 1920년대 후반부터는

38 「함창협동조합 정관」 제5장 ‘잉여금 처분 및 손실진보’에 따르면 잉여금 배당은 사업 기간 내 조합원의 조합 이용금 계산액을 기준으로 이루어졌다. 1927년 1월에 창립하여 반년이 지난 후, 함창협동조합은 조합원의 이용액을 기준으로 최고 42전에서 최하 1전을 배당하였다. 協同組合運動社, 위의 책.

39 유재기, 「소비조합이란 것이 무엇인가」, 《농민생활》 제1권 제6호(1929년 11월 27일), 8쪽.

협동조합의 이용고 배당이 협동조합적으로 운영이 되는가 판별하는 기준이 되었다.

무엇보다 함창협동조합에서는 가난한 자를 위한 운영 방식을 고안했다. 함창협동조합은 출자금을 낼 수 없는 가난한 농민들을 위하여 출자금 불입을 유예하고, 이용에 따른 출자금 적립이라는 방식을 새롭게 마련했다. 함창협동조합에서는 출자금 10원을 열 차례에 걸쳐, 1회에 1원씩 내는 것을 원칙으로 했는데, 이 금액도 부담스러운 이들을 위해 유예 제도를 만든 것이다. 협동조합을 이용하고 싶지만 출자금이 부족한 이들에게도 가입의 문을 열어두되, 이용액에 따라 출자금을 적립할 수 있는 제도로 볼 수 있다. 이를 통해 생활이 곤궁한 이들도 협동조합을 이용하고, 저축까지 이어지는 구조를 만들었다. 이는 한국에서 오랫동안 이어온 가진 자와 덜 가진 이가 함께 돕는 문화인 유무상자(有無相資)를 협동조합 원칙과 결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함창협동조합은 조합원 총회에서 임원을 선출한다는 것을 정관에 명문화하고 실천했다. 조합원에 의해 임원이 선출되어야 하며, 임원을 맡는 것은 조합원의 의무인 동시에 조합을 위한 봉사이므로 임금을 받지 않는 활동이라는 것도 정관에 명기했다. 이 외에 잉여금의 5%를 조합원 교육을 위해 활용할 수 있도록 교양준비금 등으로 적립했다. 더불어 춘궁기를 힘들게 견뎌야 하는 지역 주민들을 위하여 손실보전준비금으로 곡식이 시가보다 저렴하게 판매하고, 중단된 여자 야학 운영비를 지원하는 등의

40 인근 지역에서는 함창협동조합을 모방한 협동조합이 설립되기 시작하였다. 1927년 4월부터 상주협동조합, 청성협동조합, 풍산협동조합, 예안협동조합 등에서 함창협동조합의 정관을 그대로 따르는 동시에 이용고 배당을 강조한 것이 확인된다. 풍산협동조합의 경우 1927년 5월에 창립한 후 열린 제1회 정기총회(9.10.)에서 최고 60전에서 최저 1전으로 이용고 배당을 하였고, 예안협동조합도 제2회 정기총회(1928.2.10.)에서 최고 27전에서 최저 1전으로 이용고 배당을 실시하였다.

활동을 펼쳤다.⁴¹

함창협동조합 운영 방식은 「함창협동조합 보고서(咸昌協同組合 報告書)」로 작성되어 협동조합운동사의 전국 순회강연을 통해 확산되었다.⁴² 상주, 안동, 김천, 예천, 선산 등에 이를 모방한 협동조합이 설립되기 시작했다.⁴³ 동시에 협동조합 원칙이 알려지게 되면서, 「조선산업조합령」의 구수(口數) 미제한 등이 비판되었고,⁴⁴ 협동조합 운영의 핵심은 조합원 간 자치와 상호 부조라는 점이 강조되었다. 이와 동시에 조선총독부에 의한 관제 조합은 관청의 인가와 감독이 강요되기 때문에 “자주적 협동조합과는 취지가 판이하다.”라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⁴⁵

1920년대 초에 설립된 소비조합과 비교할 때, 1927년을 기점으로 조합원 중심의 자율성과 민주성, 그리고 경제적 평등이 강조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관제 협동조합을 비판하는 논리 또한 협동조합 원칙을 기준에 두고 있으며, 민간 협동조합의 운영 기준도 조합원에 의한 자치와 균등한 분배, 자율성 등이 강조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41 함창협동조합이 당시 가난한 농민에게 미친 영향은 약 1,000원에 달했다. 또한 자금이 부족하여 중단되었던 지역 여자야학에 운영비를 지원하였고, 덕분에 지역 여성 40여 명이 공부를 이어갈 수 있었다. 「咸昌協同組壯學 貧民救濟에 注力」, 《중외일보》, 1927년 5월 20일자.

42 協同組合運動社, 앞의 책, 6쪽.

43 1927년 4월에는 상주 모동면에 증모협동조합이 창립했고, 일주일 후 상주제창조합과 상주협동조합이 합병하여 상주면 내에서 상주협동조합이 창립되었다. 그다음 달에는 청리면의 청리협동조합이 설립되고, 상주를 넘어 안동군 풍산면에 풍산협동조합이 창립하였다. 그 이후, 안동 예안면의 예안협동조합(1927.8.13), 김천군의 김천소비조합이 설립(1928.8.)되었고, 1929년에는 경북 군위군 효령면의 효령소비조합(1929.1.26.)과 선산군의 구미소비조합(1929.5.), 예천군의 예천소비조합(1929.6.5.) 등 창립되었다. 「禮安의 協同組合創總」, 《中外日報》, 1927년 8월 17일자.

44 「協同組合論(七)」, 《동아일보》, 1929년 12월 7일자; 「協同組合論(八)」, 《동아일보》, 1929년 12월 11일자; 「協同組合論(十八)」, 《동아일보》, 1929년 12월 25일자.

45 「協同組合論(十)」, 《동아일보》, 1929년 12월 14일자.

2. 사례2: 정평소비조합, 농민운동과 협동조합의 결합

협동조합 원칙에 대한 강조는 1930년대 중반 이전까지 지속된 것으로 보인다. 이때 주목할 사례는 함경남도의 정평소비조합이다. 정평 지역에서는 농민조합을 중심으로 계급운동이 전개되는 동시에 소비조합운동도 “장족의 발전”을 보였다.⁴⁶ 정평군에 설립된 소비조합은 신상소비조합(1929년 3월 창립), 정평소비조합(1930년 5월 창립), 정원소비조합(1930년 5월 창립), 지경소비조합(1930년 11월 창립) 등이다. 이들 조합이 설립한 매장은 총 6개이며, 조합원 1,000명 이상이 가입한 것으로 추정된다.⁴⁷ 정평군 소비조합은 무산농민의 생활에 필요한 물품을 공급하며 지역 주민과의 연대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조합원 5,000명으로 구성된 정평농민조합의 지부별 반(班) 조직과 여성동우회 소속의 농촌 지역 부인 5,000여 명이 소비조합 홍보와 운영에 적극적으로 참여했으며, 이들은 주변 이웃에게 소비조합의 가입을 독려했다. 그 결과 정평군 주민들은 “조합을 자기네의 점포로 알고 1전의 물품이라도 소비조합으로 집중”적으로 이용했다.⁴⁸

정평군의 소비조합은 정평농민조합을 중심으로 확장되어 대중들을 경제적으로 각성시켜 정치적으로 진출시키기 위한 목적을 가진 동시에 협동조

46 정평군 출신인 김용성 前국회의원은 “정평은 해방 전부터 소비조합운동이나 농민 조합운동 등 사회주의 계통의 운동들이 활발했고 이때문에 옥사한 사람들도 많았는데 …”라고 회고했다. 「내 故郷에 다시 그 感激을…」, 《조선일보》, 1972년 8월 15일자; 「定平消組運動의 實績에 對하여」, 《조선일보》, 1930년 11월 24일자.

47 각 조합의 조합원 수(1932년 4월 기준), 자본금과 매출 및 순이익(1931년 12월 기준)은 다음과 같다. 신상소비조합(500명, 710원, 6,000원, 2,500원), 정평소비조합(225명, 1,500원, 1만 3,000원, 900원), 장원소비조합(200명, 1,500원, 1만 원, 700원), 신상구매조합(1,200명, 7,000원, 미상), 지경소비조합(미상). 「全朝鮮協同組合調査(四)」, 《동아일보》, 1932년 4월 9일자.

48 「定平消組運動의 實績에 對하여」, 《조선일보》, 1930년 11월 24일자.

합 원칙을 강조했다. 조합원을 위하여 질 좋은 일상용품을 저렴한 가격으로 제공하거나 먼 곳에 위치한 조합원들을 위해 선전배급대(宣傳配給隊)를 파견하여 소비조합을 조합원의 분배기관으로 인식케 했다. 또한 함창협동조합과 같이 1구 5원의 출자금에 부담스러운 주민에게 불입 횟수를 늘려 무산대중의 가입을 독려하는 운영 방식을 적용했다.

또한 이들도 이용고 배당을 강조했다. 이용고 배당은 조합원들이 물품을 구매함으로써 저축까지 이어지는 효과를 주었기 때문에, 주변 상점보다 소비조합을 이용하는 주민이 훨씬 많았다.⁴⁹ 주민들은 소비조합을 이용하는 것만으로도 이용고 배당을 받을 수 있어 직간접적으로 이익을 얻었고, 이로 인해 주변 상점보다 이용률이 높아져 소비조합은 자본 안정성을 구축할 수 있었다.⁵⁰

정평 지역 소비조합은 지역 주민의 경제적 연대로 건전한 재정 구조를 마련할 수 있었다. 신상소비조합의 경우 1929년 1월에 70원으로 설립하였지만, 창립한 지 1년도 채 되지 않아 매출 약 2만 원, 순이익 1,000원에 이르러 3년 후에는 차입금 없이 불입출자금이 2,400원에 이르고 건물도 소유하였다. 정평·장원소비조합도 적자를 내지 않고 매장을 운영했으며, 정평소비조합의 경우 1931년에 전년 대비 당기순이익이 약 10배 증가하였다.⁵¹ 이들의 매출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미약한 자본금(資力)으로 대상(大商)을 능가하게 되었다는 평가를 받았다.⁵²

49 위의 기사.

50 신상소비조합과 장원소비조합은 이용고와 구매고를 비례하여 배당하는 방식을 채택했으나, 출자금을 각각 10구와 5구로 제한하였다. 정평소비조합은 출자금은 무제한이나 배당은 이용액을 기준으로 실행했다. 「全朝鮮協同組合調査(五)」, 《동아일보》, 1932년 4월 10일자.

51 「新上消費組合 定期大會 禁止」, 《중외일보》, 1931년 6월 11일자; 「定平郡 新上消費組合 幹事會」, 《동아일보》, 1932년 5월 28일자; 「定平消費組合 第8回 幹事會」, 《동아일보》, 1932년 8월 13일자.

무엇보다 협동조합 원칙을 관철하기 위한 임원과 조합원의 노력이 있었다. 양질의 물품을 원산지로부터 구입하여 조합원에게 실비로 공급하는 것은 기본이며, 임원은 조합원의 자발적인 활동이라고 인식하여 무보수로 참여하였다. 소비조합 당무자들에게는 협동조합 및 소비조합에 대한 모든 문제를 연구하여 일반 농민들에게 친절하게 지도해야 할 것이 요구되었다. 또한 조합원에게 보고하기 위한 조합 상황, 예산안, 대차대조표, 영업실적 보고 등도 꼼꼼히 기록하였다.⁵³

정평군 소비조합 당무자들은 국제소비자협동조합데이(國際消組데이)를 한국에서 최초로 기념할 정도로 협동조합에 관심을 갖고 있었다. 국제소비조합의 날은 국제협동조합연맹(ICA) '세계 협동조합의 날(The International Cooperative Day)'을 지칭하는 것으로 1923년부터 매년 7월 첫째주 토요일에 열렸다. 정평군 소비조합 관계자들은 1930년 7월 5일, 국제협동조합의 날을 알리는 포스터를 만들어 정평군 각 시장 주요 장소에 부착했다. 또한 농민조합과 자부의 각 반(班)을 통해서도 이를 알릴 수 있도록 하였다. 신상, 정평, 장원 세 개의 소비조합은 일제히 매장 휴업을 하며 이날을 성대히 기념하였다.⁵⁴ 이들은 경제적, 정치적인 추세에 따라 소비조합이 설립되고 있으나 "세계의 소비조합 이론과 실천에 통일이 없으며 연락이 없음으로 유감으로 생각"하여 협동조합의 날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였다.

정평군 지역의 농민운동과 협동조합의 결합은 농민조합 조합원뿐 아니라 지역 주민들의 경제적 연대를 이끌었고, 주민의 생활을 향상시켰다. 하지만 이들의 성장은 1931년 1월, 정평농민조합 관계자가 대대적으로

52 「定平消組運動의 實績에 對하여」, 《조선일보》, 1930.11.24

53 「定平消組定總」, 《조선일보》, 1929년 11월 6일자; 「定平消組運動의 實績에 對하여」, 《조선일보》, 1930년 11월 24일자.

54 이는 "조선에서 처음으로 하는 국제소비조합 기념(조선初有의 國際消費組合 第1回の 紀元)"으로 기록되었다. 「朝鮮初有의 國際消組데이」, 《조선일보》, 1930년 7월 9일자.

검거되는 가운데 소비조합 임원도 연루되었고, 신상소비조합 조합장(이현직)이 사망하는 등 총회, 이사회 등 금지와 탄압을 겪으며 성장세가 꺾이게 되었다.⁵⁵

IV. 나가며

경제시민성의 연원을 일제하 민간 협동조합운동에서 검토하는 작업에서 주목해야 할 점은 협동조합 설립에 참여한 이들이 스스로를 소비자라고 인식했다는 것이다. 1920년대 초반부터 1930년대 중반에 이르는 시기 동안 지식인 남성뿐 아니라 여성, 주부, 노동자, 농민, 재일한국인 등 다양한 주체들이 여러 곳에서 협동조합을 설립했다. 협동조합 개념이 확산되기 시작하면서 각자의 필요에 따라 연대하여 조합을 설립한 것이다. 시장이 중간 상인에게 장악된 상황에서 협동조합을 통해 스스로 가격을 결정하고, 조합원에 의해 운영하고, 이용에 따라 분배하며 잉여금을 지역 사회를 위하여 활용하는 과정은 경제시민성의 단초라고 볼 수 있다. 또한 다양한 주체들이 스스로를 소비자라고 인식했다는 점에서 소비자운동의 출발로도 상정할 수 있다.

다양한 주체의 참여로 협동조합이 설립되면서 1926년 이후부터 1931년까지 설립된 협동조합의 수는 급증하였다. 하지만 1931년부터는 그 수가 급격히 감소하는 양상을 보인다. 1929년과 1930년에는 60개 이상의 협동조합이 설립되었고, 1931년에는 약 150개에 달했다. 하지만 1932년에는 그

55 「新上消費組合 定期大會를 禁止」, 《조선일보》, 1931년 6월 10일자; 「業務報告書の 謄寫도 禁止」, 《조선일보》, 1931년 11월 24일자.

절반으로 줄었고, 1933년부터는 10개가량으로 줄어들어 1935년부터 1938년에는 신규로 설립된 협동조합을 찾기 힘들다. 한국 협동조합은 1932년부터 급격히 감소하며 축소되었다고 볼 수 있다.

협동조합이 시도된 초기였기 때문에 경영이 미숙하고, 자금이 부족하다는 것도 축소의 이유일 수 있다. 하지만 1930년대 초반부터 조선총독부는 농민조합 및 사상단체와 연계된 협동조합을 선별적으로 탄압했으며, 협동조합 임원 검거와 관련 문서 압수 및 해산을 강제했다. 농촌진흥운동이 진행되며 일부 협동조합은 조선총독부에 흡수되었고, 1930년대 중반 이후 전쟁이 본격화되면서 협동조합운동의 축소는 가속화되었다.

일본 당국에서는 농촌 안정화와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일본 내지(内地)뿐 아니라 한국 등 식민지에서 협동조합 설립을 추진하였다. 그런 까닭에 일본 당국은 제령에 의하여 협동조합을 운영하지 않아도 이를 용인하는 태도를 보였다. 조선총독부에서는 일부 협동조합 강연회를 저지하거나 총회를 중단시키기도 했는데, 이러한 행위로 미루어보아 일본 당국에서도 민간 협동조합의 존재 자체를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당국의 영향력이 미치지 못하는 일부 지역에서 협동조합을 통해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고 일정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 통치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지역과 조직마다 차이는 있지만, 협동조합은 일본 당국이 미처 담당하지 못하는 일용품 공급, 교육, 의료, 마을 시설 구축 등을 제공하는 역할도 일부 담당했기 때문이다. 또한 자율성을 부여하는 것도 통치 방법 중 하나였기에 1930년 이전까지는 일부 협동조합을 제외하면 탄압의 강도가 강하지 않았다.

조선총독부는 소규모 형태로 설립되어 진행되던 협동조합에 대해 1930년 이전까지 큰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1930년대 초에 이르면, 협동조합 임원이 검거되거나 이사회, 총회, 협동조합 관련 모임이 금지되기 시작했다.

협동조합은 민중의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설립된 조직이었기 때문에 조직화를 했다는 것 자체로는 문제가 되지 않았다. 핵심은 협동조합 임원이 주로 활동하는 조직의 성격이었다. 1930년대로 들어서면 지역에서는 조선공산당재건운동과 사회주의를 기반으로 한 농민운동과 노동운동, 항일운동이 결성되기 시작했다. 특히 조선공산당재건운동은 대중운동을 토대로 지역 조직부터 결성하자는 입장이 더 우세하였고 지역 중심의 조직화가 진행되었다.

그 과정에서 협동조합은 농민조합의 부문 사업처럼 진행되기도 하고, 독자적인 조합을 운영하지만 농민조합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이중, 삼중으로 조합원을 공유하는 구조를 구축하기도 했다. 이처럼 농민조합과 긴밀하게 연결된 협동조합의 경우 농민조합의 세력을 탄압하고 약화시키는 과정에서 휘말려 탄압받게 되는 양상을 확인할 수 있다.

협동조합운동에 참여한 이들은 식민지 제국주의 상황에서 경제적 연대를 통해 덜 굶주리고, 덜 빈곤하고, 더 평등한 사회를 도모했다. 다양한 주체들은 국가 사회주의 또는 자본 중심의 경제가 아닌 방식으로 생활 경제 구축을 시도했고, 실질적으로 필요한 단체를 조직했다. 그리고 자신이 소속된 농민, 노동, 여성 단체와 중복 멤버십을 갖고 연대했다. 동시에 외국 모델과 한국 생활 문화를 융합하며, 한국식 협동 경제 모델을 형성하고자 했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일제강점기부터 해방 전후로 경제시민성의 단초가 곳곳에서 시도되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조선총독부, 지배 당국의 정책을 비판하며 자율성과 자치성, 민주성, 연대성을 강조한 민간 협동조합을 추진한 점은 사회권 획득과도 연결될 수 있다. 또한 주식회사 또는 영리기업과 유사한 형태로 운영되던 소비조합이 이용고 배당과 자본의 유무와 관계없이 평등한 조합원 중심 운영이 강조되는 것으로 변화하는 과정은

초기 한국 경제시민성의 변곡점으로 볼 수 있다. 더불어 지역 주민을 위한 잉여금 활용과 빈자를 배려한 운영 방식 등은 한국식 협동조합 자본 활용의 대표적인 모습이기도 하다.

앞으로 지역 협동조합 사례를 보완하는 과정을 거치고자 한다. 이를 통해 보다 구체적인 경제시민성의 단초를 발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후속연구로 이어가고자 한다.

참고문헌

1. 1차 자료

《개벽》. 《농민생활》. 《별건곤》. 《서북학회월보》. 《新民公論》. 《新生》. 《衆明》. 《青年》. 《學之光》.
《동아일보》. 《조선일보》. 《중외일보》.

2. 단행본

가가와 도요히코(저), 홍순명(역), 『우애의 경제학』. 홍성: 그물코, 2009.
김형미, 「한국 생활협동조합운동의 기원 - 식민지 시대의 소비조합운동 - 을 찾아서」,
《(재)아이쿱협동조합연구소(편), 『한국 생활협동조합운동의 기원과 전개』. 서울: 푸
른나무, 2012, 14~55쪽.
로버트 실젠(저), 서정민·홍이표(역), 『가가와 도요히코 평전』. 서울: 신앙과지성
사, 2018.
문정창, 『韓國農村團體史』. 서울: 일조각, 1961(초판 日本評論社, 1942).
스테파노 자마니·루이지노 브루니(저), 지현주(역), 『21세기 시민경제학의 탄생』.
서울: 북돋움, 2015.
오미일, 『경제운동』. 천안: 한국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2008.
이경란, 『일제하 금융조합연구』. 서울: 혜안, 2002.
자끄 드푸르니·마르뜨 니센·나딘 리셰 바떼스띠·리오넬 프루또·로랑 가르맹·장
루이 라빌(저), 김신양·엄형식(역), 『사회연대경제』. 서울: 착한책가게, 2021.
재일조선인단체사전한일공동편찬위원회, 『재일조선인 단체사전 1895~1945』. 서울:
민족문제연구소, 2022.
최재성, 『식민지조선의 사회경제와 금융조합』. 파주: 경인문화사, 2006.
한국협동조합운동 100년사 편찬위원회, 『한국 협동조합운동100년사』 I, II.
고양: 가을의아침, 2019.
한규무, 『일제하 한국기독교 농촌운동』. 서울: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1997.
協同組合運動社, 『協同組合運動의 實際』. 東京: 協同組合運動社, 1927.
車田篤, 『朝鮮協同組合論』. 京城: 朝鮮金融組合協會, 1932.
賀川豊彦, 『産業組合の本質とその進路』. 東京: 協同組合新聞社, 1940.
Jacobs, Meg, *Pocketbook Politics: Economic Citizenship in Twentieth-Century
America*. USA: Princeton University Press, 2005.

Kessler-Harris, Alice, *In Pursuit of Equity: Women, Men, and the Quest for Economic Citizenship in 20th Century America*, USA: Oxford University Press, 2003.

Ulrich, Peter, *Integrative Economic Ethics: Foundations of a Civilized Market Economy*, USA: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8.

White, Stuart Gordon, *The Civic Minimum: On the Rights and Obligations of Economic Citizenship*, USA: Oxford University Press on Demand, 2003.

3. 논문

가가와 도쿠아키(저), 홍민기(역), 「가가와 도요히코와 협동조합」. 『기독교사상』 제655권, 2015, 73~92쪽.

김경모, 「경제학의 구조, 경제적 사회화, 경제적 시민성」. 『시민교육연구』 제26권, 1998, 43~56쪽.

김권정, 「1920~30년대 한국기독교의 농촌협동조합운동」. 『승실사학』 제21권, 2008, 255~287쪽.

김민철, 「1930~40년대 조선총독부의 촌락 지배기구 연구」. 『역사문제연구』 제20권, 2008, 199~254쪽.

김이경, 「일제하 한국 협동조합운동의 형성과 전개: 개념·주체·연대를 중심으로」.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22a.

_____, 「일제하 경상북도 함창협동조합 설립과 모델의 확산」. 『인문과학』 제86집, 2022b, 65~108쪽.

김인덕, 「공간 이동과 제일코리안의 정주와 건강: 〈大阪と半島人〉와 〈民衆時報〉를 통한 오사카[쓰루하시(鶴橋)]의 1930년대를 중심으로」. 『인문과학』 제73권, 2019, 5~36쪽.

_____, 「일제강점기 오사카 조선촌의 식문화」. 『동방학지』 제163권, 2013, 35~55쪽.

김현숙, 「일제하 민간협동조합운동에 관한 연구」. 『사회와역사』 제9권, 1987, 189~286쪽.

문영주, 「조선총독부의 서구 협동조합 모방과 식민지적 변용」. 『한국사학보』 제32호, 2008, 309~332쪽.

박도영·박주영, 「경제교육 목표로서의 “경제적 시민성”」. 『사회과학교육연구』 제15권 제15호, 2013, 37~60쪽.

이경란, 「일제하 금융조합의 농촌침투와 산업조합」. 『역사와실학』 제19·20집, 2001, 521~551쪽.

- _____, 「한국 근현대 협동운동의 역사와 생활협동조합」. 『역사비평』 제102호, 2013, 40~71쪽.
- _____, 「한국근현대사에서 공생적 관점의 도입과 협동조합운동사」. 『사학연구』 제116호, 2014, 339~382쪽.
- 이동연, 「일제하 조선금융조합의 설립과 성격」. 『한국독립운동사연구』 제6권, 1992, 275~296쪽.
- 장규식, 「1920-30년대 YMCA 농촌사업의 전개와 그 성격」. 『한국기독교와 역사』 제4권 제4호, 1995, 207~261쪽.
- 정혜경, 「1910년대 재일유학생(在日留學生)의 경제 문제인식: 『학지광(學之光)』을 중심으로」. 『청계사학회』 제13권, 1997, 559~584쪽.
- _____, 「1930年代 初期 오사카(大阪)地域 協同組合과 朝鮮人運動」. 『한일민족문제 연구』 제1권 제1호, 2001, 71~112쪽.
- 조형열, 「일제하 협동조합운동사의 협동조합운동」. 『동방학지』 제186권 제1호, 2019, 1~36쪽.
- _____, 「협동조합운동사의 조직 과정과 주도층의 현실 인식(1926~1928)」. 『한국사학보』 제34호, 2009, 139~174쪽.
- 최병모·박형준·조병철, 「세계화·지식기반사회에 적합한 경제시민성 교육의 방향모색: 다중적·다차원적 경제시민성의 관점에서」. 『사회과교육』 제43권 제3호, 2004, 103~126쪽.
- 小嶋翔, 「戦前期消費組合運動における理念と實際運営: 平塚らいてう「消費組合我等の家」に注目して」. 『日本經濟思想史研究』 第16號, 2016, 5~23쪽.
- 堀内稔, 「阪神消費組合について」. 『在日朝鮮人史研究』 第7號, 1980, 1~16쪽.
- Bosniak, Linda, "Citizenship and Work." *North Carolina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and Commercial Regulation*, Vol. 27, No. 3, 2002, pp.497~506.
- Park, Albert L., "Reclaiming the Rural: Modern Danish Cooperative Living in Colonial Korea, 1925-37." *Journal of Korean Studies*, Vol. 19, No. 1, 2014, pp.115~151.
- Schank, Lorch, "Economic Citizenship and Socio-Economic Rationality as Foundations of an Appropriate Economic Education." *Journal of Social Science Education*, Vol. 14, No. 1, 2015, pp.56~65.
- Weber, Birgit, "Economic Education in Germany." *Journal of Social Science Education*, Vol. 2, No 2, 2002, pp.1~16.

국문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일제하 협동조합운동을 통해 아직 충분히 검토되지 않은 경제시민성(economic citizenship)의 단초를 찾는 것이다. 경제시민성은 국내에서는 경제적 시민성이라는 용어로 번역되어 주로 중고등학교 경제교육 일부에서 강조되고 있다. 독일 등 외국에서는 경제 활동과 시민의 덕목, 윤리적 판단 능력을 연결한 경제시민(economic citizen) 개념과 연결되어, 사회(society)와 공공복지(public welfare) 내에서 경제와 윤리의 결합을 강조한다. 이 과정에서 경제시민성 외에 시민경제(economia civile), 사회적경제(social economy), 사회연대경제(social and solidarity economy) 등의 개념이 대두되었다.

시민성과 경제를 연결하는 다양한 개념들은 산업화 이전 시기로 거슬러 올라가 기원을 찾는다. 유럽에서는 수도원, 길드 동업자조합, 우애조합, 각종 회(會, society) 등이 다루어졌고, 한국의 경우 두레, 향약, 계(契) 등의 계보와 의미를 검토하는 작업이 진행되었다. 여러 개념의 기준이 된 것은 결사체와 사업체가 결합되어 수익 창출뿐 아니라 운영 원칙을 확립한 협동조합이다. 경제적 행위 또한 사회 속에 내포되어 있음을 가시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던 대표적인 조직이 협동조합이었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일제강점기에 진행된 민간 협동조합운동을 통해 경제와 시민성의 결합이 어떤 형태로 이루어지는지 살펴보았다. 본문에서는 협동조합운동의 연대성과 민주성을 키워드로 하여 세 가지 내용을 중점적으로 살펴보았다. 첫째, 협동조합 원칙에 대한 조선총독부와 민간의 대응 양상을 비교 검토하였다. 둘째, 한국의 상호부조, 유무상자 등의 문화와 협동조합이 어떻게 결합되었는지 살펴보았다. 셋째, 지역 협동조합 사례를 통해 한국식 협동조합이 어떻게 확산되었는지 고찰하였다. 이를 통해 일제하협동조합운동을 통한 경제시민성의 역사를 검토하였다.

투고일 2023. 3. 14.

심사일 2023. 5. 7.

게재 확정일 2023. 5. 10.

주제어(keywords) 경제시민성(economic citizenship), 협동조합(cooperative), 협동조합운동
(cooperative movement), 경제적 연대(economic solidarity), 민주성(democracy)

Abstract

A Study on the Formation of Economic Citizenship in Korea: Focusing on the Solidarity and Democracy of the Cooperative Movement under Japanese Colonial Rule

Kim, Leekyung

This study aims to identify the beginning of economic citizenship formed through the cooperative movement under Japanese colonial rule. Economic citizenship is linked to the concept of the economic citizens, which connects economic activity with civic virtue and ethical judgment, emphasizing the marriage of economics and ethics within society and public welfare. In this process of concept formation, in addition to economic citizenship, it is also diversified into the civil economy and a social solidarity economy.

Various concepts linking citizenship and economics can be traced back to pre-industrial times. In Europe, monasteries, guilds, friendship associations, and various societies have been studied, while in Korea, the genealogies and meanings of Dure, Hyangyak, and Gye have been examined. The basis for many of these concepts was the cooperative, a combination of an association and a business that not only generates profits but also establishes operational principles. This is because cooperatives were representative organizations that could clearly confirm that economic activities are also embedded in society.

This study examines the nexus between economy and citizenship through the private cooperative movement under Japanese colonial rule. With solidarity and democracy as the keywords of the cooperative movement, this study focuses on three main areas. First, the article compares the response patterns of the Joseon Governor-General and the private sector to the cooperative principle. Second, it examines how cooperatives were combined with cultural factors, such as mutual assistance in Korea. Third, it reviews the spread of Korean-style cooperatives through the case of local cooperatives.

